

송도국제도시 B1블록 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 분양광고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2019-도시건축과-분양신고-12호(2019.10.16) 분양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승인번호 : 2019-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1번지(송도국제도시 1공구 B1블록)
- 건축연면적 : 전체 231,797.0130㎡ 중 오피스텔 109,561.5229㎡
-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공급규모 : 지하3층, 지상35~42층, 오피스텔 3개동, 총 628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면적 (단위 : 실,㎡)

타입	공급실수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84OA	208	84.9956	35.2589	120.2545	53.6175	173.8720	25.6600
84OB	420	84.9955	36.1394	121.1349	53.6174	174.7523	25.660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타입	동 (호수)	층	해당 실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 도 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30일 이내	2020.03.25	2020.09.25	2021.06.25	2022.06.25	2022.10.25	2023.02.25	
84OA	(2라인)	1층	1	163,578,393	232,746,915	23,274,692	419,600,000	20,980,000	20,98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2층	1	163,578,393	220,019,642	22,001,965	405,600,000	20,280,000	20,28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121,680,000
		3층	1	163,578,393	226,383,279	22,638,328	412,600,000	20,630,000	2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23,780,000
		4층	1	163,578,393	226,383,279	22,638,328	412,600,000	20,630,000	2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23,780,000
		5층	2	163,578,393	232,746,915	23,274,692	419,600,000	20,980,000	20,98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6층	2	163,578,393	243,656,006	24,365,601	431,600,000	21,580,000	21,58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129,480,000
		7층	2	163,578,393	243,656,006	24,365,601	431,600,000	21,580,000	21,58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129,480,000
	201동 4호라인	8층 ~ 10층	6	163,578,393	248,201,460	24,820,147	436,600,000	21,830,000	21,83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130,980,000
		11층 ~ 15층	10	163,578,393	251,837,824	25,183,783	440,600,000	22,030,000	22,03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132,180,000
		16층 ~ 20층	8	163,578,393	255,474,188	25,547,419	444,600,000	22,230,000	22,23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133,380,000
	202동 4호라인	21층 ~ 30층	20	163,578,393	259,110,551	25,911,056	448,600,000	22,430,000	22,43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134,580,000

840B	(1라인)	31층 ~ 차상층	18	163,578,393	261,837,824	26,183,783	451,600,000	22,580,000	22,58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135,480,000
		최상층	2	163,578,393	426,019,642	42,601,965	632,200,000	31,610,000	31,61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189,660,000
		1층	1	163,578,393	183,656,006	18,365,601	365,600,000	18,280,000	18,28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109,680,000
		2층	1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3층	1	163,578,393	177,292,370	17,729,237	358,600,000	17,930,000	17,93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80,000
		4층	1	163,578,393	177,292,370	17,729,237	358,600,000	17,930,000	17,93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80,000
		5층	1	163,578,393	183,656,006	18,365,601	365,600,000	18,280,000	18,28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109,680,000
		6층	1	163,578,393	189,110,551	18,911,056	371,600,000	18,580,000	18,58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7층	1	163,578,393	189,110,551	18,911,056	371,600,000	18,580,000	18,58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8층 ~ 10층	3	163,578,393	193,656,006	19,365,601	376,600,000	18,830,000	18,83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112,980,000
		11층 ~ 15층	5	163,578,393	197,292,370	19,729,237	380,600,000	19,030,000	19,03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114,180,000
		16층 ~ 20층	4	163,578,393	200,928,733	20,092,874	384,600,000	19,230,000	19,23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115,380,000
		21층 ~ 30층	10	163,578,393	204,565,097	20,456,510	388,600,000	19,430,000	19,43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116,580,000
		31층 ~ 차상층	4	163,578,393	207,292,370	20,729,237	391,600,000	19,580,000	19,58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117,480,000
		최상층	1	163,578,393	349,656,006	34,965,601	548,200,000	27,410,000	27,41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164,460,000
	(3라인)	5층	3	163,578,393	165,474,188	16,547,419	345,600,000	17,280,000	17,28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103,680,000
		6층	3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7층	3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8층 ~ 10층	9	163,578,393	175,474,188	17,547,419	356,600,000	17,830,000	17,83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106,980,000
		11층 ~ 15층	15	163,578,393	179,110,551	17,911,056	360,600,000	18,030,000	18,03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108,180,000
		16층 ~ 20층	12	163,578,393	182,746,915	18,274,692	364,600,000	18,230,000	18,23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109,380,000
		21층 ~ 30층	30	163,578,393	186,383,279	18,638,328	368,600,000	18,430,000	18,43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110,580,000
		31층 ~ 차상층	22	163,578,393	189,110,551	18,911,056	371,600,000	18,580,000	18,58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최상층	3	163,578,393	324,201,460	32,420,147	520,200,000	26,010,000	26,01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156,060,000
	201동 3호라인	1층	2	163,578,393	232,746,915	23,274,692	419,600,000	20,980,000	20,98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2층	2	163,578,393	220,019,642	22,001,965	405,600,000	20,280,000	20,28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40,560,000	121,680,000
		3층	2	163,578,393	226,383,279	22,638,328	412,600,000	20,630,000	2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23,780,000
		4층	2	163,578,393	226,383,279	22,638,328	412,600,000	20,630,000	20,63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41,260,000	123,780,000
		5층	2	163,578,393	232,746,915	23,274,692	419,600,000	20,980,000	20,98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6층	2	163,578,393	243,656,006	24,365,601	431,600,000	21,580,000	21,58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129,480,000
		7층	2	163,578,393	243,656,006	24,365,601	431,600,000	21,580,000	21,58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43,160,000	129,480,000
		8층 ~ 10층	6	163,578,393	248,201,460	24,820,147	436,600,000	21,830,000	21,83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130,980,000
		11층 ~ 15층	10	163,578,393	251,837,824	25,183,783	440,600,000	22,030,000	22,03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132,180,000
		16층 ~ 20층	8	163,578,393	255,474,188	25,547,419	444,600,000	22,230,000	22,23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44,460,000	133,380,000
		21층 ~ 30층	20	163,578,393	259,110,551	25,911,056	448,600,000	22,430,000	22,43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44,860,000	134,580,000
		31층 ~ 차상층	18	163,578,393	261,837,824	26,183,783	451,600,000	22,580,000	22,58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135,480,000
		최상층	2	163,578,393	426,019,642	42,601,965	632,200,000	31,610,000	31,61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189,660,000
	(3라인)	1층	2	163,578,393	183,656,006	18,365,601	365,600,000	18,280,000	18,28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109,680,000
		2층	2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3층	2	163,578,393	177,292,370	17,729,237	358,600,000	17,930,000	17,93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80,000
		4층	2	163,578,393	177,292,370	17,729,237	358,600,000	17,930,000	17,93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35,860,000	107,580,000
		5층	3	163,578,393	183,656,006	18,365,601	365,600,000	18,280,000	18,28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36,560,000	109,680,000
		6층	3	163,578,393	189,110,551	18,911,056	371,600,000	18,580,000	18,58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7층	3	163,578,393	189,110,551	18,911,056	371,600,000	18,580,000	18,58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8층 ~ 10층	9	163,578,393	193,656,006	19,365,601	376,600,000	18,830,000	18,83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112,980,000
		11층 ~ 15층	15	163,578,393	197,292,370	19,729,237	380,600,000	19,030,000	19,03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114,180,000
		16층 ~ 20층	12	163,578,393	200,928,733	20,092,874	384,600,000	19,230,000	19,23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115,380,000
		21층 ~ 30층	30	163,578,393	204,565,097	20,456,510	388,600,000	19,430,000	19,43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38,860,000	116,580,000
		31층 ~ 차상층	22	163,578,393	207,292,370	20,729,237	391,600,000	19,580,000	19,58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117,480,000
		최상층	3	163,578,393	349,656,006	34,965,601	548,200,000	27,410,000	27,41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54,820,000	164,460,000
	(4라인)	1층	1	163,578,393	165,474,188	16,547,419	345,600,000	17,280,000	17,28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34,560,000	103,680,000
		2층	1	163,578,393	152,746,915	15,274,692	331,600,000	16,580,000	16,58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99

	203동 2,5호라인	6층	4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7층	4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8층 ~ 10층	12	163,578,393	175,474,188	17,547,419	356,600,000	17,830,000	17,83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35,660,000	106,980,000
		11층 ~ 15층	20	163,578,393	179,110,551	17,911,056	360,600,000	18,030,000	18,03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108,180,000
		16층 ~ 20층	16	163,578,393	182,746,915	18,274,692	364,600,000	18,230,000	18,23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109,380,000
		21층 ~ 30층	40	163,578,393	186,383,279	18,638,328	368,600,000	18,430,000	18,43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110,580,000
		31층 ~ 차상층	26	163,578,393	189,110,551	18,911,056	371,600,000	18,580,000	18,58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37,160,000	111,480,000
	(3라인)	최상층	4	163,578,393	324,201,460	32,420,147	520,200,000	26,010,000	26,01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156,060,000
		5층	3	163,578,393	147,292,370	14,729,237	325,600,000	16,280,000	16,280,000	32,560,000	32,560,000	32,560,000	32,560,000	32,560,000	32,560,000	97,680,000
		6층	3	163,578,393	152,746,915	15,274,692	331,600,000	16,580,000	16,58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99,480,000
	201동 1호라인	7층	3	163,578,393	152,746,915	15,274,692	331,600,000	16,580,000	16,58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33,160,000	99,480,000
		8층 ~ 10층	9	163,578,393	157,292,370	15,729,237	336,600,000	16,830,000	16,83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100,980,000
		11층 ~ 15층	15	163,578,393	160,928,733	16,092,874	340,600,000	17,030,000	17,030,000	34,060,000	34,060,000	34,060,000	34,060,000	34,060,000	34,060,000	102,180,000
	202동 1호라인	16층 ~ 20층	12	163,578,393	164,565,097	16,456,510	344,600,000	17,230,000	17,230,000	34,460,000	34,460,000	34,460,000	34,460,000	34,460,000	34,460,000	103,380,000
		21층 ~ 30층	30	163,578,393	168,201,460	16,820,147	348,600,000	17,430,000	17,430,000	34,860,000	34,860,000	34,860,000	34,860,000	34,860,000	34,860,000	104,580,000
		31층 ~ 차상층	22	163,578,393	170,928,733	17,092,874	351,600,000	17,580,000	17,58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35,160,000	105,480,000
	203동 1호라인	최상층	3	163,578,393	298,746,915	29,874,692	492,200,000	24,610,000	24,61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147,660,000

■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복합주거단지로서 동일 블록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오피스텔 타입별, 층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 각 오피스텔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2014.12.03.개정]
- 오피스텔 공급대상 628실은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전기실 등), 관리실(MDF, 방재센터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 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음.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은 공용면적으로 하여,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5일 이후에는 미

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청약 신청 및 방법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본 분양광고일(2019.10.16)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별로 접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인당 최대 1개까지 청약신청 가능합니다.(전체 2실 청약 시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실은 당첨자 발표일에 전산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청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청약일시	• 2019.10.23(수) ~ 2019.10.24(목) (2일간)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수 08:00 ~ 17:30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수 08:00 ~ 17:30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당첨자 발표	• 2019.10.29(화) 16:00 이후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및 견본주택
계약 일시	• 2019.10.31(목) ~ 2019.11.01(금) (2일간,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 청약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청약 가능하며, 아파트투유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 하고자 하시는 분은 청약이전에 전국 시중은행지점(국민, 신한, 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시티)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 : 신한, 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시티은행의 청약신청금 인출 계좌 소유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청약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인출 계좌 소유자

■ 청약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절차	① 접속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청약하기 '오피스텔/도시형' → 청약신청 ② 청약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소지, 연락처 입력 →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스마트폰(APT2you 앱)으로도 가능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스마트폰(KB스타뱅킹 앱)으로도 가능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청약대행은행인 광주은행의 전국 본/지점 방문 청약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부적격 처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융결제원에서는 당첨자 선정시 신청자격 및 신청거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신청(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중복 청약으로 중복 당첨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지점 창구방문 청약 신청방법(법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해 신청 가능)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청약접수일 당일 광주은행(청약대행은행) 전국 본/지점에 방문청약 접수(09:00~16:00)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1. 청약신청서(광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법인	1. 청약신청서(광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대리 신청 시의 추가 서류 구비하여야 함. 5. 청약신청금 6. 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통장)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제 3자 대리인 청약시 추가 구비사항	•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공고일(2019.10.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인터넷청약 시	광주은행 본/지점 방문청약시
100만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광주은행청약접수 창구에서 직접납부

■ 청약 시 유의사항

- 본 청약은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규정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 발표
-----------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금융결제원 전산 추첨을 통해 청약신청한 타입에 따라 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 2019.10.29.(화) 16:00시 이후
- 발표장소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당사 건본주택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익영업일 2019.10.30(수)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방법

구 분	환불 장소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환불대상 : 청약신청자(당첨자 포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 및 입주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9.10.31(목) ~ 2019.11.01(금) (10:00~16:00까지)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 전화번호 : 1688-9944)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하여야 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 시	- 청약 신청 접수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오피스텔) 계약용) 및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위임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단,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증 및 청약신청금 수납영수증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 계약용)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추가)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이자지급 등의 선납할인은 없습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2회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회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0-834145	코리아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1동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별도옵션 품목 및 계좌, 납부방법

1) FCU

타입	옵션 선택	시스템에어컨 적용실(실내기)	설치대수	일반형		
				옵션금액 (세대단가)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84OA	옵션1	거실, 침실1	2	2,000,000	1,000,000	1,000,000
	옵션2	거실, 침실1 + 침실2,3 중 선택1	3	2,600,000	1,000,000	1,600,000
	옵션3	거실, 침실1 + 침실2,3	4	3,200,000	1,000,000	2,200,000
84OB	옵션1	거실, 침실1	2	2,000,000	1,000,000	1,000,000
	옵션2	거실, 침실1 + 침실2,3 중 선택1	3	2,600,000	1,000,000	1,600,000
	옵션3	거실, 침실1 + 침실2,3	4	3,200,000	1,000,000	2,200,000

2)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항 목	타입	품목명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 및 가구	전 주택형	택1	빌트인 양문형냉장고(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6,500,000	500,000	6,000,000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선택 시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무상 시공됩니다. - 미선택 시 냉창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도어미설치) - 미선택 시 가구가 설치되는 벽체의 상·하부, 후면은 벽체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빌트인 김치냉장고(LG)				
			빌트인 양문형냉장고(LG)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7,100,000	500,000	6,6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LG)				
	전 주택형	스팀오븐(SK매직)			600,000	100,000	500,000	- 미 선택시 기본 스마트오븐이 설치됩니다.
	전 주택형	세탁기 하부장			300,000	100,000	200,000	- 미 선택 시 기본 상부장이 설치됩니다.

3) 추가선택사항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오피스텔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요망 부탁드립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 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편의상 냉난방용 에어컨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에는 FCU가 적용되며,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FCU 옵션1이 무상 제공됨에 따라 옵션1을 제외한 옵션2,3을 선택할 경우 해당 옵션의 공급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옵션에서 무상제공 되는 옵션1 선택사항 금액의 차액이 되며, 해당금액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함. [예시 84OA 옵션2 선택 시 공급금액(600,000원)=옵션2 금액(2,600,000원)-옵션1금액(2,000,000원)]

4) 별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상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옵션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0-834117	코리아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3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302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편의상 냉난방용 에어컨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FCU가 설치되며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광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FCU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저층부 상가동(근린생활시설 등) 입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별 인당 건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디엠개발(주)”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 한다)은 “수분양자”의 “디엠개발(주)”에 대한 이 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단, 분양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디엠개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로서는 “디엠개발(주)”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상기항의 분양권 전매는 “디엠개발(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신청 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한다.
- “수분양자”가 위 표시재산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디엠개발(주)”의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디엠개발(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위 통지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책임진다.
- “수분양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디엠개발(주)”의 사전승인 및 요청하는 서류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 상기 항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이전 및 승계로서는 “디엠개발(주)”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계약자는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 예정일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2023년 07월경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 입주 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 인은 적용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5.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 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단지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부대시설은 전체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약취 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CG 상의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제 시공 시, 조경 및 식재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기사, 자료, 문구, 이미지 등은 실제 시공 및 분양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이나 신분증/등본(일반)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포함] 당사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호실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단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본 오피스텔의 사업주체가 정하는 일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합니다.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1~3층에 위치하여 통합으로 사용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에 차단기로 구획되어 분리되어 있음.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차장은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나 각 주차영역을 구분하여 조닝계획 되어있으며, 주차대수는 아파트 881대, 오피스텔 691대, 근린생활시설 109대로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회 및 관리사무소 주차운영방침 마련시 각 용도별 주차대수 산정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여함.
-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시설별로 주차장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단지 여건상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주차통로 등을 공유하고 있어 각 용도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들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지하주차장 이용시 각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계획상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객에 의해 인접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의 경우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및 오피스텔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냉각탑 및 실외기, 주방배기탈취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음식냄새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비주거시설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준공 시까지 상가동의 입점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오피스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부지의 인접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의 입면디자인, 색채, 마감재 등은 추후 설계변경 및 디자인개선 등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동 색채 및 외부 마감재, 옥상장식물,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입면특화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외벽 일부에 커튼월형태의 유리외장재가 설치되며, 유리외장재의 위치 및 크기, 입면디자인 등은 각 동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외벽에 설치되는 유리외장재의 색상 및 프레임 형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유리외장재 설치로 세대 외부창호의 형태 및 위치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문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위치, 크기, 수량,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 및 단지계획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테라스 공간으로 인해 오피스텔 옥상공간의 일부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테라스 난간재로는 안전접합유리를 사용하므로 고층의 경우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및 다락 테라스는 해당 입주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이에 동의하며, 최상층 세대의 입주자는 해당 다락 및 다락 테라스에 대하여 소유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 테라스 사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층으로 진입하는 계단의 위치, 형태, 단높이, 단너비, 단폭, 가구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에 따라 시야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탑구조물의 크기 및 위치 등이 변경되어 테라스 사용공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세대 내 설치되는 외부테라스는 입면특화계획에 따라 홀수층과 짝수층이 교차로 설치되는 구조로 각 동 및 호실별로 위치 및 크기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라며, 테라스 난간의 재질 및 색상, 형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 개방형 테라스 위치 안내: 84OA, 84OB 타입에 설치되는 외부 개방형 테라스는 홀수층과 짝수층이 교차로 설치되는 구조로 각 층 및 호실 별로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막이 설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법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난방용 시설이 설치되며 일부 상가에 입점자들의 에어컨 추가 설치로 인하여 옥상 일부구간에 실외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동, 세대의 경우 이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일부구간에 에어컨 실외기, 냉각탑, 주방배기탈취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음 및 조망 간섭,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에 의해 생활소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분양사업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조경, 동 현관, **공용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가 각각 별도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승강기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소방법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불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용도별 구분 등을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이후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경 시설물,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등 일부 주방가구 및 불박이장 내부에 설비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욕조 및 샤워부스 공간 제외), 샤워부스 설치타입의 경우 욕실과 침실과의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내 신발 등이 출입문과 간섭될 수 있으며, 워부스측으로 배수계획이 되어있어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평형별 실사용 공간을 고려하여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볼 사이즈 및 형태는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공급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품질 이상의 타사 제품 등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 사양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 선택형 타입에 대해서 각각 설치되는 가구, 마감재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고 이와 관련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형평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단지 및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및 차로의 높이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은 2.7m, 지하2,3층은 2.3m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조감도, 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시, 계약시 각종 상행위 및 견본주택 인근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분양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경계선 밖은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 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 색상,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 및 건축허가도면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각 공급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불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와 접하는 공간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 내, 외부 창호의 위치 및 크기, 형태, 개폐방향 등은 미관개선 및 공간활용,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도면,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에어컨 실외기공간 설치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 및 마감재 계획과 경관조명 계획은 해당 관청 변경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오피스텔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냉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하며, 난방방식은 바닥온돌 복사난방이 적용되고, 냉방시설은 실내 천정 카세트형 팬코일 유닛 및 점검구가 설치되고 설치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침실1 층2개소에 설치됩니다. 또한,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실내에 설치된 FCU는 냉방전용이고 난방은 바닥 난방코일이 시공되어 지역난방열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FCU와 바닥난방의 동시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냉방은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 전체세대에 일괄공급되며, 냉방 공급 시 난방은 불가능 합니다.
- 냉방 공급 중 난방스위치를 가동시키면, 냉수가 바닥난방배관으로 흘러가므로, 바닥결로하자의 원인이 되며, 이에따른 하자보수는 당사에서 진행 불가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제2010- 351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 난방 시스템에 의해 비 냉난방 시에도 기본요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냉방 가동 시 천정의 FCU의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문 후면에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홍보자료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GX룸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마감재,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는 일부만 제공되며, 집기 및 비품, 운영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관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축벽, 옥탑장식물, 몰딩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마감재,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어 있어 인접동의 경우 외부인의 통행 등으로 인한 단지내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동별로 설치되며, 거리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헨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오피스텔 주차장은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동별 주차장 이용시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화재시 고층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각 동에 피난안전구역 및 제연팬룸이 설치됩니다.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 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 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생활 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의 투입구는 각 오피스텔동 인근에 설치되며, 투입구실의 위치변경될 수 있으며, 투입구 위치 및 개수 및 운영시기는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 공사시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오피스텔동 인근에는 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 일부구간에 냉각탑, 에어컨실외기, 설비공간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눈부심, 소음, 진동, 연무,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전면 공간은 오피스텔 및 점포 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점포의 소유자가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에 면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점포의 소유자가 상행위에 따른 부속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민은 소음피해 또는 통행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위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제3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변경 시까지 인천 명선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신설 및 배치 등의 계획은 교육청 등 관할관청의 판단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하며, 관할관청의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욕실배기는 공동배기로 옥상으로 배출됩니다.
- 오피스텔 주방 상부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는 환기를 위한 전영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방상부 설치 시 매립설치, 다용도실 천정설치 시 매립 또는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단지내 생활폐기물 투입구(음식물 폐기물 투입구 제외)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설치높이/개소/ 크기/사양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가연성 폐기물만 대상으로 자동집하시설 설치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 수거)
-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하여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6.11.10.)』에 근거하여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도시는 배관미구축 지역으로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일정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안정정인 가스공급을 위해 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역정압기, 가스배관 등)의 설치위치, 공사일정 및 설치방법 등은 미확정 사항으로 추후 사업주체와 가스공급업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에 유치원, 학원 등의 학생 수송을 위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으며, 정류장 등은 주거 시설 입주자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전기차 충전 시설은 사용승인 전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예정임.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101,104동 인근에 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202동 인근에 중수도시설이 설치됩니다.
- 지하1층 101동, 103동 인근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평면 형태에 따라 채광창 설치가 제한되어 일부 세대 현관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헬기 구조공간이 설치되며, 19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실외기실, 환풍실, 기계,전기실 등으로 인해 인접 동 및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통합되어 설치되고 모든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내진등급 1등급, MMI-진도 Ⅷ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단지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하여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전면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법을 위한 공간이 조성 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단지 여건에 의해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간은 공용면적으로 1층 세대 입주자의 사유면적이 아니고, 입주자는 해당 공간에 대하여 소유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습니다. 공간의 바닥재포장 등 용도변경 및 조경수의 추가식재,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계획 및 녹지면적은 추후 조경특화계획 및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경계부 및 단지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전면부에 설치된 조경 및 식재계획으로 보행 및 이용의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옥탑에 TV 공청 안테나(전파방향기준)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지붕층 및 각종 화단 또는 공터 / 헬룸)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기타 주요 사항

■ 송도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향후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북측 도로의 사업시행자는 인천해양수산청으로서 북측도로의 개설시기는 미확정이나, 본 사업부지 공동주택의 입주시기까지 도로 개설이 어려울 시에는 사업주체가 인천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해당 구간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예정임.
-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용지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측으로 16m도로, 서측으로 20m도로, 남측으로 35m도로, 북측으로 25m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에 근접한 동 및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용지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 및 공원계획 변경,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사와 무관함.
- 당해 지구 내에는 지상 및 지하에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하수처리장, 폐기물 집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자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획이 변경되어, 입주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송도국제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전면공지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송도국제도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 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시 공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연수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음.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19-104-0000400호	170,886,520,000원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 또는 당해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합니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분양광고】 건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분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합니다)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럭키기술단	(주)서광이에프	(주)서광이에프
감리금액	4,274,270,000	1,814,620,316	600,600,000	61,347,000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금관리대리사무신탁사 : 코리아신탁(주)

- 코리아신탁(주)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회사로서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이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됨을 인지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시행회사	디엠개발(주)	285011-0352992
시공회사	대방건설(주)	110111-0757158
	대방산업개발(주)	115911-0069601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themcity-songdo.co.kr

■ **건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번지

■ **분양문의** : ☎ 1688-9944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대방건설(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IB프라자5층))

- 등록번호 : 경기-08-6066

- 허가번호 : 2019-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 착공일 : 2019년 09월

- 분양건축물용도 : 오피스텔

- 분양문의 : 1688-9944

- 분양 홈페이지 : <http://themcity-songdo.co.kr>

- 건본주택위치 및 분양안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 (송도국제도시 B1블록 대방디엠시티 건본주택)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